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신원식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방대학교의 민간교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군무원 인원 증편이 '23 ~ '27 국방부 중기부대계획과 '24년 연도부대계획에 반영되어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(- 4명)을 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(+4명)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붙임과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
■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[별표] <u>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 수 및 부교수의 정원표</u> (제12조제1항관련) <table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80%;">총 계</td>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right;">61</td></tr> <tr> <td>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</td>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32</u></td></tr> <tr> <td>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</td>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3</u></td></tr> <tr> <td>군인·군무원 이외의 특정직 국가공무 원인 교수 및 부교수</td>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6</td></tr> </table>	총 계	61	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	<u>32</u>	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	<u>3</u>	군인·군무원 이외의 특정직 국가공무 원인 교수 및 부교수	26	■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[별표] <u>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 수 및 부교수의 정원표</u> (제12조제1항관련) <table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 style="width: 80%;">총 계</td>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right;">61</td></tr> <tr> <td>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</td>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28</u></td></tr> <tr> <td>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</td>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7</u></td></tr> <tr> <td>군인·군무원 이외의 특정직 국가공무 원인 교수 및 부교수</td>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26</td></tr> </table>	총 계	61	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	<u>28</u>	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	<u>7</u>	군인·군무원 이외의 특정직 국가공무 원인 교수 및 부교수	26
총 계	61																
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	<u>32</u>																
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	<u>3</u>																
군인·군무원 이외의 특정직 국가공무 원인 교수 및 부교수	26																
총 계	61																
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	<u>28</u>																
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	<u>7</u>																
군인·군무원 이외의 특정직 국가공무 원인 교수 및 부교수	26														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6245